포레나 평택안중 공동주택 입주자모집공고

■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견본주택 관람 안내

- **「포레나 평택안중」** 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견본주택을 설치하지 않았으며 홍보물 시안에 제공된 이미지 및 내부 모델하우스 사진은 참고용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으며, 코로나19 등에 따라 지정되어 있는 감염병 및 공공기관 사고예방 지침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.
- 분양 일정, 청약 방법 등은 아래 및 카탈로그 내용을 **「포레나 평택안중」** 홈페이지(주소 : hanwha.forena.co.kr/pyeongtaek)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- 입주자모집공고문과 견본주택 관람예약 관련 문의 및 상담은 홈페이지 내 온라인 상담 및 방문예약 시스템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.
- 입주자 및 입주예정자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■ 2020.11.17. 개정된 「주택공급규칙」 에 따라 특별공급 및 1순위 청약 시 주택소유확인서류 제출 대상이 변경되었습니다.

- 특별공급 및 1순위 청약 시 주택소유확인서류 제출 대상 : 2020.10.27 청약 접수하는 분부터 제출(2020.04.27. 이전까지 청약 접수한 분은 제출 하지 않음)
- 주택소유확인서류 : 해당 세대의 청약자 가족관계증명서 (상세주소 포함) 및 건축물대장 (상세주소 포함)

■ 2018.12.11. 개정된 「주택공급규칙」 에 따라 일부 청약자격 및 제한사항이 변경되었습니다.

- 세대주 및 1순위 요건 강화 : 청약통장 가입 후 2년 경과, 납입횟수 24회 이상 (지역 및 전용면적별 상이)
- 재당첨 제한 :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내 공공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5년 이내 (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환매주택 제외)
- 재당첨 제한 적용 주택 :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내 민영주택 (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환매주택 제외)
- 청약통장 가입금액 : 지역 및 전용면적별 상이

■ 2018.12.11. 개정된 「주택공급규칙」 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대한 특별공급 및 1순위 청약 시 거주지역 요건이 폐지되었습니다.

■ 2017.11.01. 개정된 「주택법시행령」 에 따라, 85㎡ 초과 민영주택 및 85㎡ 초과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은 청약가점제 적용 주택이 아닙니다.

■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 변경 안내

- 2.3.1에서 2.3.2로 변경된 주택에 대한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 : 2020.10.27 청약 접수하는 분부터 적용(2020.04.27. 이전까지 청약 접수한 분은 종전 기간 적용)
- 전매 제한 기간 :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3년 (투기과열지구 내 주택공급 등 제한 주택은 5년)

■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대한 실거주의무 적용 안내

- 실거주의무 적용주택 :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환매주택
- 실거주의무 기간 : 수도권 3년 (투기과열지구 내 주택공급 등 제한 주택은 5년)

■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대한 재당첨 제한 및 실거주의무 기간 산정방식 안내

- 재당첨 제한 기간 및 실거주의무 기간 산정 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 이전 입주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입주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.

■ 분양가격 공시 및 분양가격 인터넷 사전공개 안내

- 분양가격 공시 :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후 견본주택 및 홈페이지 (www.applyhome.co.kr) 에 게시
- 분양가격 인터넷 사전공개 : 견본주택 개관 2일 전 홈페이지 (www.applyhome.co.kr) 에 게시

■ 분양가격의 산정에 관한 사항

- 분양가격 : 기본형건축비 + 택지비 + 건축비 + 부대비용 + 가산비용 - 감정평가액 - 감가상각비 - 개발이익 - 조합원 이익
- 기본형건축비 : 국토교통부 고시 기본형건축비 적용
- 택지비 : 「주택법」 제57조에 따라 산정
- 건축비 : 「주택법」 제57조에 따라 산정
- 부대비용 : 「주택법」 제57조에 따라 산정
- 가산비용 : 「주택법」 제57조에 따라 산정
- 감정평가액 : 「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5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등이 감정평가한 금액
- 감가상각비 : 「주택법 시행령」 제59조 제1항 제4호 및 별표 4에 따라 산정
- 개발이익 : 「주택법 시행령」 제59조 제1항 제5호 및 별표 5에 따라 산정
- 조합원 이익 : 「주택법 시행령」 제59조 제1항 제6호 및 별표 6에 따라 산정

■ 주택의 설계·시공 및 감리에 관한 사항

- 설계자 : 건축사 김종성 (종합건축사사무소)
- 시공자 : 한화건설 주식회사
- 감리자 : 건축사 김종성 (종합건축사사무소)